

문서번호	세무2과-3625
결재일자	2014.2.24.
공개여부	비공개

★주무관	세외수입담당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광현	이재국	이상규	김석진	김병환	02/24 김영배
협 조		세입정리담당 김형원			



-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방안 추진계획**

2014. 2.

기 획 경 제 국  
 세 무 2 과

-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

## 세원발굴 및 징수를 제고방안 추진계획

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 분야별 세입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금년도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I 추진개요

■ 추진목표 : 2014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달성

■ 추진기간 : 2014. 1. 1 ~ 2015. 2. 28

● 현년도 : 2014. 1. 1 ~ 2015. 2. 28

● 과년도 : 2014. 1. 1 ~ 2014. 12. 31

■ 2014년도 세외수입 예산 현황(구 일반회계) : 35,901백만원

● 현년도 예산액 : 32,890백만원 [117백만원 증액(0.4%)]

● 과년도 예산액 : 3,011백만원 [872백만원 증액(40.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014년	2013년		
계	35,901	34,911	989	2.83
경상적세외수입	26,979	26,583	396	1.49
재산임대수입	524	522	2	0.33
사용료수입	12,359	12,541	△182	△1.45
수수료수입	2,583	2,458	125	5.07
사업수입	385	395	△10	△2.53
징수교부금수입	10,107	10,023	84	0.84
이자수입	1,022	644	378	58.73
임시적세외수입	8,922	8,328	593	7.12
재산매각수입	2,366	3,785	△1,419	△37.49
부담금	100	100	0	0.00
기타수입	3,445	2,305	1,140	49.45
지난년도수입	3,011	2,138	872	40.79

## ■ 체납현황

● 2013년 12월말 현재 : 293,949건 51,426백만원

(단위 : 건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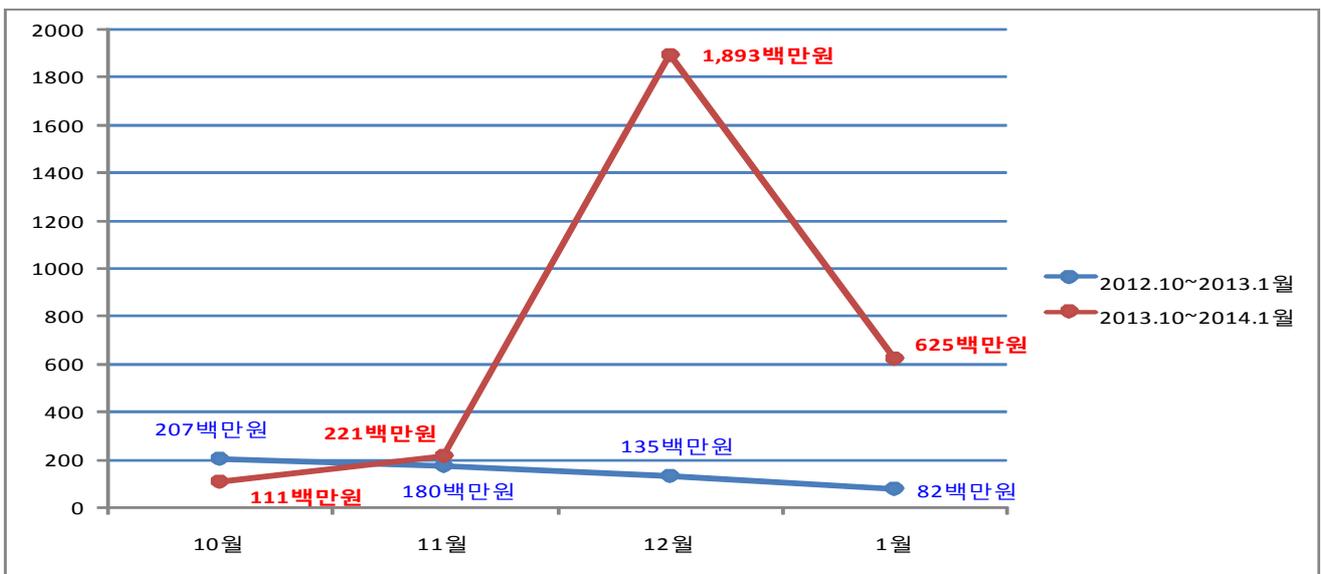
구 분	부 과		징 수		미 수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77,104	146,921	83,155	95,495	293,949	51,426	65.0
구 세외수입	371,795	137,369	79,532	89,883	292,263	47,486	65.4
일반회계	102,194	105,563	31,946	68,436	70,248	37,127	64.8
특별회계	269,601	31,806	47,586	21,447	222,015	10,359	67.4
시 세외수입	5,309	9,552	3,623	5,612	1,686	3,940	58.8
일반회계	2,470	3,226	1,724	2,563	746	663	79.4
특별회계	2,839	6,326	1,899	3,049	940	3,277	48.2

## ■ 체납징수업무 이관 후 징수실적(4개월간)

● 추진기간 : 2013. 10월 ~ 2014. 1월

● 추진대상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일반회계)

● 징수실적 : 2,515건 2,850백만원(구 일반회계)



➔ 2013년 3개월 동안 전년 동기의 522백만원에 비해 **1,703백만원 (326%)** 증가한 2,22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 2014년 1월은 2013년 1월의 징수액 82백만원 대비 **543백만원 (662%)** 증가한 625백만원 징수

## II 추진방향

- 세입과목별·부서별 세입증대 방안 강구
- 세외수입 신규 체납발생 최소화 및 기존 체납 증점정리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시책 추진
- 부서별 업무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을 통한 격려 및 동기유발

## III 세부 추진계획

### ■ 세입과목별·부서별 세입증대 방안 강구

- 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재산매각·기타수입 등 소관 세입과목별로 신규 세원발굴, 임대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의 합당한 인상요인 유무 검토, 부과누락 사례 근절을 위한 자료조사와 정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 부서별 실정에 맞는 세입증대 방안 적극 추진

### ● 세입과목별 세입증대 착안사항

#### ▶ 재산임대·사용료수입(예산액 : 12,882백만원)

- ➔ 소관부서 : 문화체육과, 도로시설과, 재무과 등 14개 부서
- ➔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인근의 임대 부동산 등의 시세,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하였을 때 임대료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등
- ➔ 하천·도로 등의 사용(점용)료의 경우 부과금액 산출근거 토지의 공시지가, 사용면적, 적용요율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매설물·지상 시설물·차량진입로 및 간판사용에 따른 점용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토지에 대한 일제 또는 순차적 조사 등

#### ▶ 징수교부금수입(예산액 : 10,107백만원)

- ➔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환경과, 교통행정과, 도로시설과, 재무과, 세무2과

- ➔ 징수교부금의 원천인 학교용지·환경개선·교통유발부담금, 도로·하천사용료(시수입) 및 취득세·자동차세 등의 시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 이자수입(예산액 : 1,021백만원)

- ➔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재무과
- ➔ 공금의 용도, 예치 가능기간(장단기) 등에 따라 각기 적절한 방법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 가능성 검토

### ▶ 기타수입(예산액 : 3,445백만원)

- ➔ 소관부서 : 주택관리과, 교통행정과 등 23개 부서

#### ➔ 과태료

- 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질서 확립 및 선량한 준법시민들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분강화 방안 강구(예컨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의 주차위반 단속 완화와 같은 서민생활 보호 방안 병행 추진 검토)

#### ➔ 이행강제금

-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단속강화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대한 위반면적 산정오류로 인한 과소 부과사례 여부와 함께 법령에 따른 부과 횟수·기간의 적정성 등 검토

#### ➔ 변상금

- 우리구 관리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례 근절을 위한 일반토지·도로·하천 등의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추정 등

### ▶ 지난해도수입(예산액 : 3,010백만원)

- ➔ 소관부서 : 세무2과, 교통지도과

- ➔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를 비롯하여 기존에는 시행하지 않던 각종 행정제재 등 강화

-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체납처분 강화

-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및 관허사업제한 추진

##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추진 검토

- ▶ 2012. 5월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간 협약에 따라 2013.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는 2013년말 현재 서울시 21개 구에서 시행중
- ▶ 타 자치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 소관구에서 징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촉탁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 자치구에 지급
- ▶ 2013년도에는 시행 첫 해인 만큼 활발한 영치활동이 전개되지 않았으나 금년도부터 각 자치구의 영치로 인한 징수금액이 커질 것으로 보여 우리구 수입에 대한 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
- ▶ 번호판 영치대상 체납 과태료는 현과년도 및 회계도 무관하여 특별회계인 주정차위반과태료도 포함되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세무2과간 업무협의를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단속차량, 카메라, 단말기(스마트폰) 등 단속장비 구입예산 필요

### ➔ 번호판 영치업무 추진시 소요예산 : 약 1억원

- 무인단속차량 구입 1대
- 차량부착용 무인단속 CCTV 1대, 무선 단말기(PDA) 4대
- 차량 영치휴대용 프린터기 및 운영물품
- 영치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 당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직 인력운영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억5천만원의 예산 요청하였으나 미편성

### ➔ 영치를 위한 팀(반) 운용 : 세외수입 체납징수 총괄부서에서 추진

- 차량 과태료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 업무추진시 인력운용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 인사팀과의 의견 조율 필요

## ■ 세외수입 신규 체납발생 최소화 및 기존 체납 중점정리

### ● 신규 체납발생 최소화

- ▶ 부과자료 정비를 통한 적기·적정 부과
  - ➔ 정기성 부과자료에 대한 사전정비 철저
  - ➔ 부과시 정확한 납세자번호 입력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입력
    - 납세자번호 오류시 재산조회 및 주소조회가 불가능
  - ➔ 부과 사유 발생시 최대한 신속 부과
- ▶ 부과 및 독촉고지 철저
  - ➔ 부과고지시 납부의무자의 정확한 소재지 파악하여 송달
  - ➔ 부과분 미납시 기한내 반드시 독촉고지서 송달
    - 독촉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필수적 절차인 동시에 소멸시효 중단효과 발생
  - ➔ 부과 및 독촉고지서 미납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송달근거 확보하여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 ● 세외수입 부서별 지도점검 실시

- ▶ 세외수입 관련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오류사항의 사전예방 및 시정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 점검대상 : 세외수입 관련부서 전체
- ▶ 점검방법 : 부서별 세입규모 및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 방문 및 서면 점검
- ▶ 점검기간 : 2014년 하반기 중 1~2주의 기간 동안 실시
  - ➔ 예년의 경우 체납자료 위주로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지난년도 체납징수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 연 1회로 축소
- ▶ 점검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전반
  - ➔ 부과시 납세자번호 등 납세자정보 적정입력 여부
  - ➔ 세입과목별 징수·부과취소·환급 등의 결의 이행 여부

- ➔ 부과 및 독촉고지서의 송달근거 확보 여부
- ➔ 독촉기한 경과 체납분에 대한 채권확보 실태 등

### ● 체납자료 정리철저

- ▶ 체납자료 발생시 신속한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 철저
  - ➔ 독촉분 미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 분기별 1회 이상 전국토지자료 조회결과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반영
  - ➔ 독촉기한 경과후 최소 2개월 1회 이상 체납고지서 발송
    - 매월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체납자 주소 현행화 실시
- ▶ 소액 체납자라도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확행
- ▶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다건 고액인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
- ▶ 지방세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 환급 대상자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를 통한 강제징수
- ▶ 고액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제공을 통한 금융거래 제한 추진
- ▶ 체납정리기간 상시 운영
  - ➔ 매년 일정기간을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부서별 체납정리를 독려하였으나 2013 10월부터 지난년도 체납징수업무를 세무2과에서 총괄추진하고 있는 바,
    - 지난년도 체납징수는 연중 계속 집중 추진하고자 상시 체납정리를 중점 추진하고
    - 현년도 체납징수의 경우 상반기에는 체납발생 건수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하여 11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 설정·운영

##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시책 추진

### ●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정기 개최 : 세금-DAY 간담회 운영

- ▶ 개최목적 : 지방세 부과·징수기법을 세외수입 업무에 접목시켜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부서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

- ▶ 개최시기 : 매 분기별 1회
- ▶ 참석대상 :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 ▶ 개최내용
  - ➔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
  - ➔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당부·전달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 ● 규정·지침 등 전파

- ▶ 세외수입 업무추진 관련 규정·지침 변경 및 프로그램 보완사항 등에 대한 교육·전파

### ●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 배포

- ▶ 세외수입의 종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사례를 포함하는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여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 도모

## ■ 부서별 업무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

### ● 시상목적

- ▶ 세입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지급을 통해 격려
- ▶ 세입증대에 대한 동기유발로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

### ● 시상대상 : 세외수입 징수실적 등이 우수한 8개부서

- ▶ 최우수부서 1, 우수부서 1, 모범부서 3, 장려부서 3

### ● 시상내용 : 표창 및 시상금 240만원 지급

- ▶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40만원, 모범부서 각 30만원, 장려부서 각 20만원

### ● 평가지표 : 5개 지표

- ▶ 10개 항목에 100점 부여
  - ➔ 징수실적 : 31점(세입 신장율, 금액 징수율, 건수 징수율)
  - ➔ 세입 기여도 : 12점

- ➔ 체납징수 활동 : 30점(채권확보율, 재산압류 건수)
- ➔ 업무처리 적정성 : 17점(납세자번호, 사망자 부과, 미처리 내역)
- ➔ 행정사항 : 10점
- ➔ 회의·교육참석(+4), 각종 보고기일 준수 여부(△2), 부과시 납부기한이 말일이 아닌 자료(△2) 등에 따른 점수 가감

## IV 행정사항

### ■ 각 부서별·세입과목별 세입증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계획서 제출 : 2014. 3. 31(월)
- 추진실적 제출 : 2014. 11. 14(금)

### ■ 2014년 세입징수 우수부서 평가기준(안) 참고하여 업무추진 철저

- 평가기준의 행정사항 및 교육·보고사항에 대한 반영은 2014. 2. 20일부터 적용

### ■ 부과 및 독촉분에 대한 송달근거 반드시 확보

### ■ 2013년도 부과 체납분에 대한 이관 대비 철저

- 2013년도에 부과하여 체납으로 남아 있는 자료는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세무2과로 이관되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리사항, 소송 진행사항 등에 대한 내용 정리
- 미독촉 자료에 대하여는 100% 독촉 완료후 이관
- 유재산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붙임 1.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현황 1부

2. 2014년 세입징수 우수부서 평가기준 1부. 끝.

## 2014년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현황

[구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주요 세입과목
<b>합 계</b>		<b>35,900,760</b>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문화 복지국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45,800	기타수입(과징금, 수강료)
	어르신사회복지과	26,863	기타수입(과태료, 반환금)
	여성가족과	168,042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문화체육과	9,386,843	사용료수입, 기타수입(이행강제금)
도시 환경국	주택관리과	720,000	기타수입(이행강제금)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3,913	징수교부금수입(학교용지부담금)
	건축과	181,579	기타수입(이행강제금)
	도시디자인과	290,000	사용료수입, 기타수입(변상금, 과태료 등)
	환경과	541,800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과태료)
건설 교통국	교통행정과	854,198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과태료)
	교통지도과	351,022	재산임대수입, 기타수입(과태료, 지난년도수입)
	도로시설과	2,284,430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16,200	기타수입(과태료, 공원이용P/G참가비 등)
기획 경제국	기획예산과	855,560	이자수입, 기타수입(공단전산시스템 임대수입 등)
	사회적경제과	2,647	재산임대수입(도시가스 시설 임대료)
	일자리경제과	68,314	사용료수입, 기타수입(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재무과	6,176,716	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징수교부금·이자·재산매각·기타수입
	세무1과		
	세무2과	11,501,996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지난년도수입 등)
행정국	행정지원과	296,863	재산임대수입(우리은행 등), 사용료수입,
	자치행정과	50,520	재산임대수입(도시가스 시설 임대료)
	청소행정과	1,131,929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과태료)
	민원여권과	233,040	수수료수입, 기타수입(과태료)
	디지털정보과	56,678	사용료수입(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지적과	184,000	부담금, 기타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보건소	건강정책과	378,326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과태료 등)
	건강관리과	16,177	사업수입(유료예방접종 등)
	의약과	45,512	사업수입(진료비 등), 기타수입(과태료, 과징금)
	보건위생과	31,792	기타수입(과태료, 과징금)

※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중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 2,792백만원

## 2014년 세입징수 우수부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순위간차
<b>총 점</b>	<b>100점</b>		
<b>징수실적</b>	<b>31점</b>	[10월말 징수보고서 기준]	
세입 신장율	15	(징수액 - 전년 징수액) / 전년 징수액	0.4
금액 징수율	8	징수액 / 부과액	0.2
건수 징수율	8	징수건수 / 부과건수	0.2
<b>세입 기여도</b>	<b>12점</b>	[10월말 징수보고서 기준]	
구 세입 기여도	12	부서 징수액 / 우리구 징수액	0.3
<b>체납징수 활동</b>	<b>30점</b>	[11월말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준]	
채권확보율			
금액기준	6	채권확보 체납액 / 총체납액	0.15
건수기준	6	채권확보 체납건수 / 총체납건수	0.15
압류건수			
부동산	12	부동산 압류건수	0.3
차량	6	차량(기계장비 포함) 압류건수	0.15
<b>업무처리 적정성</b>	<b>17점</b>	[11월말 전산 기준으로 과년도 체납분 포함]	
납세자번호 오류	6	시스템상 납세자번호 오류 건수	0.15
사망자 부과자료	6	사망일 이후 부과된 체납자료	0.15
미처리 내역	5	시스템상 환금 처리대상 건수	0.1
<b>행정사항</b>	<b>10점</b>	[11월말 기준]	
각종 시책사항 등	10	과년도 체납자료 이관 및 기타 행정사항	
<b>교육·보고사항 등</b>		[11월말 기준]	
회의·교육참석	+4점	회의·교육참석 여부	
제출기일 준수	△2점	자료 제출기일·보고기일 준수 여부	
부과시 납부기한	△2점	납기가 말일이 아닌 자료	

※ 각 순위별 점수 편차는 균등하게 반영하되 1위와 2위간의 점수는 기준 편차의 2배 적용

## ○ 징수실적

- 징수율 항목의 배점을 전년도 보다 줄이고 2014년도의 신규세원 발굴 및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입 신장율 항목을 신설하여 단일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15점의 배점 부여
- 신장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하되 신장율이 마이너스인 경우 최하점 부여

## ○ 세입 기여도

- 행정재산 사용료,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등의 특별한 징수노력을 요하지 않고 체납 또한 발생되지 않는 세입과목은 징수실적 및 세입기여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세입 신장율 평가에는 포함)
- 세입 기여도는 2013. 11월부터 2013. 12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 이는 이전 회계연도의 실적이 포함되어 2014년 세입징수 평가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정기분 부과 등으로 인하여 매년 11~12월에 세입이 집중되는 부서의 경우 매년 정당한 평가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2013. 11~12월 징수액(2013년 세입) + 2014. 1~10월 징수액(2014년 세입)

## ○ 체납징수 활동

- 현년도 체납자료에 대한 채권확보 비율과 압류건수를 기준으로 30점 배점
- 기존 자료검토 결과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실적이 너무 미미하여 체납자 부동산 압류건수 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게 배시

## ○ 업무처리 적정성(오류나 미처리 내역 등이 없는 부서는 모두 만점 부여)

- 현년도는 물론 과년도 체납을 포함하여 납세자번호 오류자료나 사망자에 대하여 부과한 자료가 체납상태로 있는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2014. 11월말 현재 시스템상 환급 처리대상 건수에 따라 차등 배점

## ○ 행정사항

- 2013년도 체납분 이관(2014. 3월)에 따른 송달근거 확보, 고액체납자 내역, 소송사항 등 정리실적 등 평가
- 2014년도 기간 중 신규시책·특수시책 등에 대한 평가

## ○ 가점 및 감점사항

- 업무추진·협의를 위한 회의,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등 참석 회수 및 인원수에 따라 가점(1인 1회 참석당 0.2점씩 가산하되 1회 2인이상 참

석시 추가 참석 1인당 0.1점 추가 가산 - 1회 총 0.4점까지 인정)

- 각종 자료 제출 및 보고기일 미준수에 따른 감점(지연 1일당 0.1점씩 감점)
- 현년도 체납자료 중 납기가 10일 ~ 25일 사이에 있는 자료건수 비례 감점

※ 세무2과-792(2014.1.13)호와 관련하여 본 평가기준(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수합한 결과 다수의 의견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이 3개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배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당초(안)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안)과 같이 확정